

광주지방법원 2024. 5. 7 선고 2023가단11861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소송대리인 A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4. 23.

판 결 선 고 2024. 5. 7.

주 문

1. 피고는,

가. 원고들에게 별지(1) '부동산 표시' 기재 부동산의 3층 168.8㎡ 중 별지(2)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(가)' 부분 28㎡를 인도하고,

나. 각각의 원고들에게 495,000원 및 2023. 9. 3.부터 위 가.항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5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의 가.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990,000원 및 2023. 9. 3.부터 주문 제1의 가.항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3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(3)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3. 일부 기각 부분

공동임대인의 차임 등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채권이므로, 원고들은 각자 자신의 공유 지분의 범위 내에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. 따라서 원고들의 금전 지급 청구 중 각 1/2 지분을 초과하여 청구한 부분은 기각한다.

판사 하종민

별지